



김정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jhyunkim@hanafn.com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년) / 변호사

경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한양 근무, 사회연대은행 자문변호사

동상동몽(同床同夢) 부부를 위하여

부부 일방에게 재산이 집중되었거나, 공동재산이라도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채무로 인한 피해가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부부 간의 재산관리 방법을 정하여두고, 재산의 분배를 적절하게 해둔다면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숨은 성공 비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부인인 멜라니아와 결혼하기 이전에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각각 2,500만 달러(약 291억원), 500만 달러(약 5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1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자료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인 '억만장자 마인드'에서 자신의 성공비

결 중 하나로 혼전계약서의 작성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혼전계약서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계약을 소개한다.

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재산계약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부부 재산의 귀속, 관리방법, 공동생활의 비용부담 등)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혼인의 특성상 혼인 성립 이후에는 합리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혼인을 신성시해왔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계약의 법리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혼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 전에 축적한 재산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혼인기간 중 일방 배우자의 재산관계로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분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부 일방에게 재산이 집중되었거나 공동재산이라도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채무로 인한 피해가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부부 간의 재산관리 방법을 정하여 두고, 재산의 분배를 적절하게 해둔다면,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액의 재산이라도 이것을 부부가 공동의 명의로서 관리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절세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부부재산에 관한 민법의 원칙은 '부부별산제'다. 부부별산제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제도이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이것은 명의를 기준으로 재산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혼인 중의 사정 변경(재산 변동, 재산의 관리방법, 부부 공동의 생활비에 대한 부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의 재산 관리나 사정 변경에 대해 혼인 전에 미리 정하여 둬으로써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피하고, 부부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은 특별한 형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부부가 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민법상 기본원리(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와 부부평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혼하는 경우(혹은 외도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식의 부부재산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의 부부간 법률관계를 정하여 두는 것이므로 설행 이혼('혼인 해소')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단,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행해지는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특히 협의에 의한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도금지'나 '외도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식의 약정은 부부 '재산'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간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계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민사계약(혼전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혼전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외도 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식의 과도한 약정은 사회질서와 부부평등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재혼부부의 경우 이전에 이혼을 경험하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또한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배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형식(등기)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남편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등기해야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만혼 및 재혼부부의 부부재산계약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혼인을 앞두고 '계약'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스러운 일이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한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재산계약(또는 혼전계약)에 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이혼이 점점 증가하면서 결혼에 앞서 한 번쯤은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을 생각해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혼 및 만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 각자가 혼인 전에 이미 축적한 재산이 상당한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재혼부부의 경우 이전에 이혼을 경험하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또한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배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이혼(혼인 해소) 이후의 재산관계를 규율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과

[참고] 부부재산계약과 관련한 민법 조문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 시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영미법의 혼전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민사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혼전계약은 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부부재산계약보다 다양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유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혼전계약서에 '혼인 전 당사자가 소유한 특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관리는 각 소유자가 한다'고 정하여 두고, 더불어 '당사자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계약상의 각자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쌍방이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기준의 하나로 참작될 수 있다.

현명한 부부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초 한 결혼정보업체가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3.1%로 절반을 넘었을 정도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첫 출발을 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을 작성하면서 쌍방의 재정상태(재산 및 채무)를

자연스레 파악할 수 있으며, 혼인생활 중 재산의 취득과 소비 등에 관한 합의점도 찾을 수 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경우가 많다.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을 작성하며 동상동몽(同床同夢) 부부를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떨까. ✧

부부재산계약을 등기하는 법

1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부부 외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i) 필요서류

-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 혼인신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ii) 등기 장소

-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지방법원

2 법원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그 유효성을 인정받거나, (인감) 도장을 2부에 걸쳐서 찍는 방식(계인)을 통하여 유효성 입증의 용이하도록 해준다.

... SUMMARY

- ①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부부별산제'는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②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생활 중'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혼재산분할 등 혼인해소 이후의 사정이라도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한 때에는 추후 분할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④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 이미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경우 및 재혼의 경우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대한민국 유언대용신탁

대대손손 가문의 부와 영예를 잇는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유의

계약&집행 시 회 신탁재산의 0.2%(최저 1,000만원)
& 0.3%(최저 1,500만원) 관리보수 연 0.2~1%

유효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광고-155호(2017.07.06~2018.0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7-03011호(2017-07-14~2018-07-13)

문의 : 02-2002-2229

부부재산계약

○○○(부가 될 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처가 될 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 혼인 전 성립한 특유재산에 관하여 확인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혼인하기 이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관계를 명시하고, 혼인 후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부부재산의 공유추정에 대한 예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유재산의 표시)
[갑] 특유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재산 유형에 따라(부동산/예금 등) 분류하면 특유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1. 부동산**
- 1) 서울 종로구 종로 33 토지 00평방미터
 - 2) 서울 종로구 종로 34 상가 12동 304호
- 2. 현금 및 예금**
- 1) 현금 00원
 - 2) KEB하나은행 예금채권 00억원

- [을]**
- 1. 부동산**
- 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 토지 00평방미터
 - 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 상가 12동 304호
- 2. 현금 및 예금**
- 1) 현금 00원
 - 2) KEB하나은행 예금채권 00억원

제3조(관리) 쌍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은 당해 소유권자가 유지 관리 하도록 하며 부득이 상대방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 관리하게 한다 한다.

제4조(혼인 중 정보공유) 갑과 을은 모든 수입(퇴직금 포함)과 부수입, 수당, 채무를 서로에게 공개한다. 매 년 12월 31일자로 자산부채 현황표를 작성하여 부부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공동)관리한다.

제5조(자산의 관리) 자산을 처분 할 때와 취득할 때는甲과乙은 협의한다. 특히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의 발생)
① 갑과 을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설 수 없고,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는 채무에 대해 갑 또는 을은 어떠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동 약정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제 3 자에 대한 배상은 일방의 특유 채무이다.

② 결혼 전 갑과 을이 차용한 금액은 각자의 특유채무이다. 단 전 세금 마련을 위한 채무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7조(생활비 관리)
갑과 을은 수입의 50% 이상을 (공동)생활비로 제공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공동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제8조(혼인의 해소)
1.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계약상의 각자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
2. 이혼 시에는 본 계약상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50:50으로 공평히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측은 20%를 추가로 분배 받는다.
3. 자녀의 양육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당사자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하되 혼인관계의 파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자녀양육 우선권이 배제된다.
4. 제2항의 재산 분배에는 위자료 및 기타의 모든 이혼관련 비용지급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추가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의 분할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쌍방은 본 계약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이행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혼 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와 ○○○○는 이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18. 1. .

갑(부가 될 자): ○ ○ ○ (인감도장) (881230-1000000)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을(처가 될 자): ○○○○ (인감도장) (861130-1000000)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출처 : 예스폼비즈폼 '부부재산약정서' 양식 참고